보통법 유산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1826년 헌장과 1878년 법령을 통한 계수

제A편에서 추적한 영국령 싱가포르의 법적 기초는 1826년 11월 27일의 제2차 사법헌장(Second Charter of Justice)에 있습니다. 이 헌장은 새로 설치된 사법재판소(Court of Judicature)에 "정의와 형평에 따라" 판결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법원은 훗날 이 조항을, 현지 사정에 적합하고 부당함 없이 적용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시 시행 중이던 영국의 제정법, 보통법, 형평법을 도입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1] 이 계수로 싱가포르는 식민지가 자체 입법기관을 갖추기 훨씬 전인 첫 10년부터 보통법 관할권이 되었습니다.

상사법은 1878년에 두 번째의, 보다 구체적인 기초를 얻었습니다. 그해의 민사법령(Civil Law Ordinance)은 상사법 문제에 관하여 해협식민지에서 적용될 법은 현지 입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같은 시기 영국에서 적용되는 법과 같다고 규정했습니다.[2] 제B편 제I장은 이것이 런던의 거래 상대방이 이해하는 상사법을 다루던 상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규칙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훗날 민사법(Civil Law Act) Section 5가 된 그 문언으로는 특정 시점에 어떤 영국 제정법이 싱가포르에 적용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은행, 보험 또는 물품매매에 관한 새로운 영국 법률이 나올 때마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다 그것이 묵시적으로 싱가포르 법의 일부가 되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독립 이후 이러한 불확실성은 주권 국가에 곤혹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상사법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외국 의회의 결정에 좌우되었기 때문입니다.[3]

1993년 영국법적용법

의회는 1993년 영국법적용법(Application of English Law Act 1993)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법은 1993년 11월 12일 민사법 Section 5를 폐지했습니다. 새 법의 Section 3은 형평법 원칙을 포함한 영국 보통법이 그 날짜 이전에 싱가포르 법의 일부였던 한도에서 "싱가포르와 그 주민의 사정에 적용 가능한 한" 계속 싱가포르 법의 일부가 된다고 규정합니다.[4] 이 단서 덕분에 싱가포르 법원은 현지 사정이 요구하는 경우 계수된 원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4와 Section 5는 영국 제정법을 다룹니다. 이 법의 부속서에 열거된 영국 법령만이 싱가포르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다른 어떤 영국 법령도 싱가포르 법의 일부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5] 이 목록은 자동 계수의 문을 닫았습니다. 1993년 이후 영국 상사 입법의 변경은 싱가포르 의회가 이를 채택하는 경우에만 싱가포르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거래 당사자에게 이 개혁은 열린 질문을 닫힌 목록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이는 대출계약 작성자가 필요로 하는 종류의 확실성입니다.

추밀원 상고의 폐지와 1994년 실무성명

독자적인 보통법을 향한 두 번째 단계는 법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94년까지 런던의 추밀원 사법위원회(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는 영국 직할 식민지 시절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의 최종 상고법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설 항소법원이 설치된 뒤, 의회는 1994년 사법위원회(폐지)법(Judicial Committee (Repeal) Act 1994)을 통해 1994년 4월 8일부로 추밀원에 대한 모든 상고를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항소법원이 싱가포르의 최종 상고법원이 되었습니다.[6]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석 달 뒤 항소법원은 새로운 지위를 어떻게 행사할지 밝혔습니다. 1994년 7월 11일의 실무성명(Practice Statement)에서 항소법원은 통상 자신의 종전 판결과 추밀원의 판결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취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이를 고수하는 것이 "싱가포르의 사정에 부합하는 법의 발전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벗어나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소급적 변경이 계약상 및 물권상 권리를 교란할 수 있으므로 이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7]

그 성명에 표현된 신중함은 금융중심지에 중요합니다. 법을 변경할 자유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기존 계약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법원은 상거래 당사자에게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 성명은 싱가포르 법률가들이 자생적 법체계의 발전, 즉 영국의 뿌리에서 싱가포르에서 자라난 법이라고 부르는 것의 헌장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보통법

독립 이후 싱가포르의 민사법은 영국 보통법과 구별되게 발전해 왔으며, 영국 판결은 싱가포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설득적 권위로 남아 있습니다.[8] 제F편 제I장은 이러한 발전을 법치주의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 위치시킵니다. 실무에서 싱가포르 판사들은 영국, 호주, 캐나다 및 기타 영연방 국가의 판결을 주의 깊게 읽고 이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논리가 싱가포르에 맞지 않으면, 먼저 자신들의 종전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판사와 학자들이 쓴 싱가포르 계약법의 대표적 체계서들은 그 자체로 권위 있는 참고문헌이 되었습니다.[9]

이러한 발전에는 판례 보고 인프라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법학원(Singapore Academy of Law)은 대법원의 독점 허가에 따라 1992년 처음 발간된 싱가포르 판례집(Singapore Law Reports)을 발행하고, LawNet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합니다. 또한 1965년 이후 선고된 사건들을 판례집 특별권으로 재발간했습니다.[10] 따라서 싱가포르 법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은 외국 변호사는 하나의 공식 판례집과 독립 이후 전 기간을 포괄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영어로 된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오늘날의 법원

싱가포르 대법원은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으로 구성됩니다. 2021년 고등법원은 제1심 관할을 넘겨받은 고등법원 일반부(General Division)와 일정한 민사 항소를 심리하는 고등법원 항소부(Appellate Division)로 나뉘었습니다.[11] 2015년 1월 5일 설립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은 고등법원 일반부의 한 부로서 국제적·상사적 성격의 청구를 심리하며, 그 재판부에는 대륙법 국가와 보통법 국가 출신의 국제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12] 제F편 제III장에서 이 법원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여기서 이 법원이 중요한 것은 준거법 결정에 더해 주는 요소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법을 선택하는 당사자는 거래 상대방의 관할권 출신 판사들이 일부 재판부를 구성하는 싱가포르 법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1. Wikipedia, "Law of Singapore"(2026년 11월 최종 접속): 헌장은 "full Power and Authority … to give and pass Judgement and Sentence according to Justice and Right"를 부여; 1826년 11월 27일 시행 중이던 영국 제정법, 보통법, 형평법은 현지 사정에 부적합하지 않는 한 적용됨. ↩
2. Wikipedia, "Law of Singapore"(2026년 11월 최종 접속): 1878년 민사법령은 현지 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적용되는 법이 "was to be the same as that administered in England at the corresponding period"라고 규정. ↩
3. Wikipedia, "Law of Singapore"(2026년 11월 최종 접속): 이 조항의 문언으로 인해 어떤 영국 제정법이 적용되는지 결정하기 어려웠음; 1993년 폐지. ↩
4. Wikipedia, "Law of Singapore"(2026년 11월 최종 접속): 민사법 Section 5는 1993년 11월 12일 폐지; 영국법적용법 Section 3은 영국 보통법과 형평법을 "so far as it is applicable to the circumstances of Singapore and its inhabitants" 존속시킴.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5. Wikipedia, “Law of Singapore”(2026년 11월 최종 접속): 부속서에 열거된 영국 제정법만이 적용되거나 계속 적용되며, “no other English enactment is part of Singapore law”. ↩
6. Wikipedia, “Law of Singapore”(2026년 11월 최종 접속): 상설 항소법원의 설치는 “paved the way for the abolition of all appeals to the Privy Council with effect from 8 April 1994”; 1994년 사법위원회(폐지)법(1994년 제2호)은 1966년 사법위원회법(Judicial Committee Act 1966)을 폐지. Wikipedia, “Supreme Court of Singapore”(2026년 11월 최종 접속): “The Court of Appeal became Singapore’s final appellate court”. ↩
7. Wikipedia, “Law of Singapore”(2026년 11월 최종 접속), 1994년 7월 11일 실무성명에 관하여: 항소법원은 종전 판결을 고수하는 것이 “constrain the development of the law in conformity with the circumstances of Singapore”하는 경우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이 권한은 계약상 및 물권상 권리를 소급적으로 교란할 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 ↩
8. Wikipedia, “Law of Singapore”(2026년 11월 최종 접속): 독립 이후 “the civil law of Singapore has developed distinctly from the English common law”; 영국 판결은 “not considered binding”이지만 “are still persuasive”. ↩
9. Andrew Phang Boon Leong (ed.), *The Law of Contract in Singapore*, Singapore, Academy Publishing, 2012. ↩
10. Wikipedia, “Law of Singapore”(2026년 11월 최종 접속): 싱가포르법학원은 1992년 “under an exclusive licence from the Supreme Court of Singapore” 처음 발간된 싱가포르 판례집을 발행하고, LawNet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며, 1965년 이후 사건들을 특별권으로 재발간함. ↩
11. Wikipedia, “Supreme Court of Singapore”(2026년 11월 최종 접속): 대법원은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으로 구성; 2021년 고등법원은 사실상 일반부와 항소부로 나뉘었으며, 후자는 “only civil appellate jurisdiction”을 가짐. ↩
12. Wikipedia, “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2026년 11월 최종 접속): 2015년 1월 5일 설립; “a division of the General Division of the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Singapore High Court"; 대륙법 국가와 보통법 국가 출신의 국제판사; Singapore Courts, "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judiciary.gov.sg(2026년 11월 최종 접속): "international and commercial nature"의 청구를 심리하는 고등법원 일반부의 한 부.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